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61 |
|----------|----|

발의년월일 : 2007. 8. 31  
발 의 자 : 옥영복 의원의 6인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07.5.17)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의정활동 강화 및 회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2,3,5조)
- 나. 연간 총회의 일수 및 임시회 회기 일수 조정 (안 제3조)
- 다.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 (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 나. 첨부 :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 회의일수 현황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와 제41조”를 “제44조와 제47조”로 한다.

제2조중 “제38조”를 “제44조”로 한다.

제3조중 “제41조제3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연간 회의총일수는 80일”을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로 하며, “임시회는 42일”을 “임시회는 52일”로 한다.

제4조 제1호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제118조”를 “제12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b>제1조 (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b>제1조 (목적)</b>.....<br/>.....<u>제44조와 제47조</u>.....<br/>.....<br/>.....</p>   |
| <p><b>제2조 (개최)</b>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p>   | <p><b>제2조 (개최)</b>.....<u>제44조</u>.....<br/>.....<br/>.....</p>   |
| <p><b>제3조 (회기)</b>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8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38일 이내, 임시회는 42일 이내로 한다.</p>   | <p><b>제3조 (회기)</b>.....<u>제47조제2항</u>.....<br/>.....<u>90일</u>.....<br/>.....<br/>.....<u>52일</u>.....</p>                                    |
| <p><b>제4조 (집회)</b>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br/>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7월 8일</u>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생략)</p> | <p><b>제4조 (집회)</b>.....<br/>.....<br/>.....<br/>.....<br/>.....<u>6월 20일</u>.....<br/>.....<br/>.....<br/>.....<br/>.....2. (현행과 같음).....</p> |
| <p><b>제5조 (심의)</b>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br/>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u>제118조</u>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 <p><b>제5조 (심의)</b> ① .....<br/>.....<u>제134조</u>.....<br/>.....<br/>.....② .....<u>제127조</u>.....<br/>.....</p>                               |

##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 회의 일수 현황

| 의회명   | 회의총일수  | 회기                                | 정례회 집회일                         | 비고 |
|-------|--------|-----------------------------------|---------------------------------|----|
| 시 의 회 | 120일이내 | · 정례회 : 2회 45일이내<br>· 임시회 : 75일이내 | · 1차 : 6월 19일<br>· 2차 : 11월 21일 |    |
| 중 구   | 90일이내  | · 정례회 2회<br>· 총일수범위내 자율조정         | · 1차: 6월 20일<br>· 2차 : 11월 20일  |    |
| 서 구   | 120일이내 | · 정례회 : 2회 45일이내<br>· 임시회 : 75일이내 | · 1차 : 7월 12일<br>· 2차 : 12월 1일  |    |
| 동 구   | 80일이내  | · 정례회 : 2회 35일이내<br>· 임시회 : 45일이내 | · 1차 : 6·7월중<br>· 2차 : 11·12월중  |    |
| 영 도 구 | 100일이내 | · 정례회 : 2회 35일이내<br>· 임시회 : 65일이내 | · 1차 : 7월 5일<br>· 2차 : 12월 3일   |    |
| 부산진구  | 100일이내 | · 정례회 : 2회<br>· 임시회 : 1회당15일이내    | · 1차 : 7월 15일<br>· 2차 : 11월 25일 |    |
| 동 래 구 | 80일이내  | · 정례회 : 2회 40일이내<br>· 임시회 : 40일이내 | · 1차 : 6월 19일<br>· 2차 : 11월 25일 |    |
| 남 구   | 80일이내  | · 정례회 : 2회<br>· 총일수범위내 자율조정       | · 1차 : 7월 7일<br>· 2차 : 11월 25일  |    |
| 북 구   | 80일이내  | · 정례회 : 2회 50일이내<br>· 임시회 : 30일이내 | · 1차 : 7월 8일<br>· 2차 : 12월 1일   |    |
| 해운대구  | 100일이내 | · 정례회 : 2회 40일이내<br>· 임시회 : 60일이내 | · 1차 : 6월 20일<br>· 2차 : 11월 20일 |    |
| 사 하 구 | 80일이내  | · 정례회 : 2회 38일이내<br>· 임시회 : 42일이내 | · 1차 : 7월 8일<br>· 2차 : 11월 25일  |    |
| 금 정 구 | 100일이내 | · 정례회 : 2회<br>· 총일수범위내 자율조정       | · 1차 : 7월 1일<br>· 2차 : 11월 21일  |    |
| 강 서 구 | 100일이내 | · 정례회 : 2회<br>· 총일수범위내 자율조정       | · 1차 : 7월 1일<br>· 2차 : 11월 25일  |    |
| 연 제 구 | 100일이내 | · 정례회 : 2회 45일이내<br>· 임시회 : 55일이내 | · 1차 : 6월 15일<br>· 2차 : 11월 25일 |    |
| 수 영 구 | 120일이내 | · 정례회 : 2회 50일이내<br>· 임시회 : 70일이내 | · 1차 : 7월 7일<br>· 2차 : 11월 25일  |    |
| 사 상 구 | 80일이내  | · 정례회 : 2회<br>· 총일수범위내 자율조정       | · 1차 : 6·7월중<br>· 2차 : 11월 1일   |    |
| 기 장 군 | 100일이내 | · 정례회 : 2회<br>· 총일수범위내 자율조정       | · 1차 : 6월 20일<br>· 2차 : 11월 25일 |    |

☞ 80일이내(6개구) :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하구, 사상구

☞ 90일이내(1개구) : 중구

☞ 100일이내(7개구) :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 120일이내(시포함 3개) : 시의회, 서구, 수영구